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9일 토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뉴욕에서 현재 인증을 받은 생수 및 대용량 수제품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라벨 재고가 고갈된 경우,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인증 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기타 다른 주에서 승인 받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생수 제품 또는 대용량 물 제품을 규율하는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0장 5-6.12항 부족조항 (a) (4)절. 인증 번호가 새겨진 라벨을 공급 받은 후에는, 이 라벨의 사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 뉴욕주 바깥에 위치하며 뉴욕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약 또는 기기의 제조업체, 재포장업체 또는 도매업자가 처방약 또는 기기를 뉴욕에 배송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6808항 및 이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
- 다음 조건에 따라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의약품 및 장비의 임시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뉴욕 면허를 가진 약국이 다른 주에 위치하며 뉴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약국, 도매업자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 용품이나 기기를 수령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808항, NYCRR 137조.
 - 뉴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대 업체는 그 업체가 위치한 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면허 증명서류가 뉴욕 약국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약국은 뉴욕 면허가 없는 기타 약국, 도매업체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체로부터 수령한 약물이나 장치의 일시적인 부족에 대한 문서를 보관합니다.
 - 약국은 뉴욕 면허가 없는 기타 약국, 도매업체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체로부터 수령한 약물이나 장치에 대하여 모든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합니다.
 - 상술한 모든 문서 및 기록은 비상 사태 선포 후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약품 또는 장비가 공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공인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 2020년에 뉴욕주에 있는 등록 또는 공인된 의료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가 이러한 졸업생의 의료 행위가 언제나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의사에 의해 관리 감독 받는다면 무면허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 6524항 및 NYCRR 8장 60부.
- 코로나19(COVID-19) 보건 위기 기간 동안 필수 문제에 대한 보건부의 검토 기능을 제한하고 제28조 운영자 및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단체에 관하여 비상 선포 기간 및 부속 연장 기간 동안 이송 공지의 시간 제한 재량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공 보건법(Public Health Law) 2801-a항 세부조항 (4) (b)절 및 (c)절 (ii) 부속절 (iii)부속절, 공공 보건법 3611-a항 부속조항 (2) (c)절 과 부속조항 (1) (c)절 부속절 (ii).
- 성공회(Protestant Episcopal) 교회가 모든 연례 선거를 연기하고 회의를 통해 주정부 비상 재난 기간 동안 공식적 회합이나 회의를 통한 인준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 공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종교 법인법(Religious Corporations Law) 43항 및 45항.
- 대중의 의견을 전자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여 공공 참여 의무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의 적용을 중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환경 보존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제3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75조 및 NYCRR 6장 552부, 550부, 601부, 609부.
- 지속 또는 종료될 수 있는 해당 행정명령 90일 후까지 예정된 제정 통지 만료일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주 행정절차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202(2)(a)항.
- 공공 의견이 전자 또는 우편 방식의 서면으로 수령되고 모든 필수 참석이 화상회의 또는 기타 전자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연기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6장 621부 및 624부에 의해 이행되는 환경 보존법 제70조, NYCRR 6장 704부 및 750부에 의해 이행되며 신청 승인을 처리하는 환경 보존법 제17조.
- 행정명령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 폐기장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선 공청회 및 특정 브라운필드 클린업 부지에 대한 공청회를 대책에 대한 서면 의견을 계속 접수받고 결정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조건으로 중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NYCRR 6장 375부, 환경 보존법 제27조.
- 부모가 차 학년도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구에 제출해야 하는 전학 요청의 4월 1일 요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3635항.
-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호흡 치료 전문가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 8510항 및 NYCRR 8장 부속절 79-4.
-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상담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창조 예술 치료사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까지, 8402항, 8403항, 8404항, 8405항 및 NYCRR 8장 부속절 79-9, 79-10, 79-11, 79-12.
-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장례사가 뉴욕주 면허를 가지고 등록한 장례사의 감리 감독하에 장례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무면허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 또는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뉴욕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3400항, 3420항부터 3423항, 3450항부터 3457항.
- 뉴욕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장례사가 뉴욕주 면허를 가지고 등록한 장례사의 감리 감독하에 장례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무등록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 또는 보건 커미셔너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뉴욕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3428항.
- 보건 커미셔너를 대리하는 자가 장례사 혹은 장의사가 시신 각 구의 처리와 이송을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시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비영리법인법(Not for Profit Corporation Law) 1517항, NYCRR 19장 203.3항, 203.6항, 203.13항 및 NYCRR 10장 77.7(a)(1)항.

- 보건 커미셔너를 대리하는 자가 장례사 혹은 장의사, 카운티 검사관, 검의관 및/또는 의료 담당자가 자신의 관리 하에 사망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신을 묘지로 이관, 화장터나 공동묘지 이송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비영리법인법 1517항, NYCRR 19장 203.3항, 203.6항 203.13항 및 NYCRR 10장 77.7(a)(4)항.
- 주정부 호적 담당자(State Registrar)가 지역 호적 담당자의 요청 및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에 따라 사망 인증을 등록하고 매장 및 제거 승인을 발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보건법 4140항, 4144항 및 비영리법인법 1502항, 1517항, 및 NYCRR 19장 203.1항, 203.4항, 203.8항, 203.13항 및 NYCRR 10장 13.1항.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9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모든 지방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또는 학교는 법에 의해 예정된 공청회 혹은 2020년 4월 또는 5월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행사를 2020년 6월 1일까지 일체 연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문회는 참석자 혹은 공무원이 화상회의, 동영상회의 및/또는 기타 비슷한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본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납세 능력 결정 또는 징수와 관련된 문서에 수기 서명 대신 디지털 서명을 수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세 재무 커미셔너는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는 문서의 종류를 결정하고 디지털 서명 수락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정의해야 합니다.
- 선거법(Election Law) 8-400항은 이에 일시적으로 개정되며, 일시적인 질병인 코로나19의 유행과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인해, 2020년 6월 23일 또는 그 이전에 열릴 모든 선거에 대해 일시적 질병으로 인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안정기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 2020년 6월 23일 또는 그 이전에 개최된 모든 선거에 한하여 선거법 8-400항은 전자 투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며, 직접 서명이나 부재자 투표소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